

2026년 제1회 국립공주병원 간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공주병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국립공주병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급, 총 3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기관(근무지)
간호서기 (8급)	3명	임용(채용) 예정일 ~ 정년	국립공주병원 (충남 공주시)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근무조건
간호직 (일반직)	간호서기 (8급)	○ 병동 및 외래 환자 간호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환자 간호업무 ○ 간호 질 향상 관리 및 간호 연구 등 ○ 기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기타 공무 수행 등	3교대 근무

※ 임용예정직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거주지: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9. 10.) 기준]

채용분야	자격요건	
간호직	필수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필수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필수자격요건’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 9. 10.)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 8. 14.) 기준]

① 직무분야 관련 근무 경력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1년 이상 - (직무분야 관련 근무 경력)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에서의 근무 경력 1년 이상(연차별 차등 배점) * 보건소 근무 경력 제외
②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u>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유무 배점)</u> * 복수(2개)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인정 불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적극적 서류전형 시 해당(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의 5배수(5명) 이상인 경우)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근무 경력 1년 이상(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은 해당 우대조건 등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고,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 증명하며,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재직증명서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기관명(근무처), 근무기간, 근무시간, 주당시간(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등), 담당업무(예시: 간호업무, 정신질환자 간호업무)를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예시:[별지 제9호 참고])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복수2인) 서명 및 연락처(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통상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근로시간으로 간주)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병원 나.치과병원 다.한방병원 라.요양병원 마.정신병원 바.종합병원

○ **경력 외 우대요건 관련**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유무 배점)

※ 복수(2개)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인정 불가)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및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발급)

☞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급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급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5명)**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적극적 전형 시 서류전형 평가요소**: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근무 경력,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직무 전문성) 해당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 또는 그룹 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8. 3.(월) ~ '26. 8. 14.(금)	'26. 8. 3.(월) ~ '26. 8. 14.(금)	'26. 9. 2.(수)	'26. 9. 10.(목)	'26. 10. 7.(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공주병원 누리집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8. 3.(월) ~ 2026. 8. 14.(금) 08:3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주 소	문의전화(연락처)
(32601)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 서무팀 인사담당 (간호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041-850-5720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 분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필수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3.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9.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10. 간호사 면허신고 확인증 사본 1부	
	1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원본 1부	
	12.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위원 제척, 기피 확인용)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13.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참고 - 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
	14.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급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with the following structure:

- Left Menu:**
 -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 (highlighted with a red box)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당·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타
- Main Content Area:**
 - 민원증명** (highlighted with a red box):
 - 즉시발급 증명 +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highlighted with a red box, with a red arrow pointing to the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link below)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 공동사업자내역
 - 대표자등록내역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정사업자등록번호 직권발소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신고사실없음
 - 전용계좌개설여부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체납내역
 - 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장업 당시 업종코드 확인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
 - 휴·폐업·재개업 신고 +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안내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 체납 관련 신청 +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041-850-5720)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급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간호직 (일반직)	간호서기	3명	국립공주병원 (충남 공주시)
주요 업무	○ 병동 및 외래 환자 간호(3교대 근무)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환자 간호업무 ○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치료적 간호활동 ○ 간호 질 향상 관리 및 간호 연구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간호학생의 교육 및 훈련 ○ 정신건강사업 관련 업무 등 ○ 기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기타 공무 수행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 지식	○ 환자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국가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수행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 ○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규 및 관련 지침에 관한 이해		
응시자격요건	필수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필수	
우대요건	① 직무분야 관련 근무 경력	○ (직무분야 관련 근무 경력)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에서의 근무 경력 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보건소 근무 경력 제외	
	②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직무 분야 자격증)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발급)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1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2. 응시원서 1부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응시수수료 - 8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우대사항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4호 작성(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5호 작성(A4 3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6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7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8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9.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간호사 면허증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면허증만 해당
10. 간호사 면허신고 확인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간호사 면허신고 확인증 ※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11.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2.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모두 제출 ○ 전형위원 제척 확인으로만 활용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제공되지 않음

구 분	내 용
13.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개별사항	○ 해당자에 한함.(별지서식 제9호 참고) ○ 이력서 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u>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u> (재직증명서에 한함)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대표자 인(직인)과 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하단에 별도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하단에 별도 기재)
14.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개별사항	○ 해당자에 한함.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성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응시직급
	국립공주병원	간호직	간호서기

목 록	제출유무	
	제출	미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필수) *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필수) *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면제로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증빙서류 제출		
3.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필수) * 별지 제8호 서식		
9. 간호사 면허증 사본(필수)		
10. 간호사 면허신고 확인증 사본(필수)		
1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필수)		
12.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필수)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모두 제출		
13. 경력(재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u>별지 제9호 서식 참고</u> *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14.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제출서류 항목에 대하여 유무란에 “O” 표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국립공주병원장 귀하

응시원서

국립공주병원장 귀하

본인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간호서기 / 간호직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응시번호	간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 도로명 주소 기재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5,000원) 또는 첨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국립공주병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간호서기 / 간호직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응시번호	간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 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분야 기재
(예) 간호서기(간호직)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채용분야 작성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직무분야(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간호서기 (간호직)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20 . . .

응시자 :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간호서기 (간호직)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주요 업적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 3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공주병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립공주병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신규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	2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별지서식 제9호 >

경력(재직) 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 명 사 항	근 무 기 간	부서 및 직급(위)	채용형태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주당 근무시간	병원급의료기관 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해당여부 O , X	
						O	X
	0000.00.00. ~ 0000.00.00.	간호부 간호사	정규직 / 비정규직	간호업무 수행	주40시간		X
		정신병동 간호사		정신의학과 병동 간호업무 수행 /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수행	시간제 (주20시간)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발 급 자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인

① 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양식으로 제출 가능(단 아래 ②③ 번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음.)

②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인, 발급자인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서식 제10호>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후 제출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공주병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